

소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225호

#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윌일	2023. 11. 15.

##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25호 제출연월일 : 2023. 11. 15. 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강증진과장

#### 1. 개정이유

금연지도원을 활용한 금연구역 지도·점검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수정 (안 제1조, 안 제4조제1항제3호, 안 제6조)
  -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「국민 건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5로 수정하여 표기

## 나. 금연지도원의 임기 (안 제5조제1항)

- 금연지도원 지도·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연 지도원의 임기 개정

### 다.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(안 제8조제1항)

-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최저임금 및 논산시 생활임금액을 반영 하여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#### 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 【기획감사실-11681호(2023.11.01.)】
- 2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 【복지정책과-32458호(2023.10.30.)】
- 3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아님 【예산실-12202호(2023.10.18.)】
- 4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1. ~ 2023. 10. 30. (20일간)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(041-746-2653)

#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4"를 "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5"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"제16조의4제1항제1호"를 "제16조의5제1항제1호"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2년"을 각각 "1년"으로 한다. 제6조 전단 중 "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"를 "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" 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1일(4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"를 "활동수당을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성		명
입	건 강	증 진	과 장	ो	혜	란
안	건 강	정 책	팀 장	0]	7	화
자	담	당	자	정 (74	은 6-80	비 54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국민건</u>	제1조(목적) <u>「국민건</u>
<u>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4</u> 에	<u>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5</u>
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	
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4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	제4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
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	①
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	
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	
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	
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논산시장	
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	
출하여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	3
원 추천서(「국민건강증진법	
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	
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	제16조의5제1항제1호
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	
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	
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금연지도원의 임기) ① 금	제5조(금연지도원의 임기) ①
연지도원의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한	<u>1년</u>

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 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 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 다. 제6조(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) 저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 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(영 제16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 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 고,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 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• 관리 하여야 한다.

<u>.</u>
②
<u>1년</u>
제6조(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) -
<u>영</u> 제16조의5
제1항제1호
,

제8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(4시간이상 근무)당 4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금연지도원이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.

제8조(금연지도원의	활동수당지
급) ①	
	활동수당을
<u>&lt;단서 삭제&gt;</u>	

② (현행과 같음)

## 붙임1 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  - 제 8 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)
- 2. 비용추계결과
  - 가. 추계의 전제
  - 최저임금 및 논산시 생활임금 매년 인상되는 점을 반영
  - 나. 추계 결과
  - (2023~2027년) 세출비용 : 285,12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<u>산출기초</u>							
	【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】(2003년기준 ① 활동보상금 - 주간근무자 : 2명 × 42주 × 주4회 × 44,000원 = 14,784천원 - 야간근무자 : 4명 × 44주 × 주3회 × 66,000원 = 34,848천원							
	② 유류비 - 6명 × 12개월 × 40,000원 = 2,880천원							
	구분	대 상 자	예상 인원	산 출 기 초	금 액 (천 원)			
기타	합계		60명		285,120	285,120		
보상금	2023년	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 활동보상금	2명	168회×2명×44,000원 =14,784,000원				
		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 활동보상금	4명	132회×4명×66,000원 =34,848,000원	52,512			
		금연지도원 교통비 수당	6명	12개월×6명×40,000원 =2,880,000원				
	2024년	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 활동보상금	2명	168회×2명×46,000원 =15,456,000원				
		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 활동보상금	4명	132회×4명×69,000원 =36,432,000원	54,768			
		금연지도원 교통비 수당	6명	12개월×6명×40,000원 =2,880,000원				

	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	2명	168회×2명×48,000원		
	활동보상금		=16,128,000원		
2025년	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	4명	132회×4명×72,000원	57,024	
	활동보상금	_	=38,016,000원	37,021	
	금연지도원	6명	12개월×6명×40,000원		
	교통비 수당	0.0	=2,880,000원		
	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	2111	168회×2명×50,000원		
	활동보상금	2명	=16,800,000원	59,280	
2026년	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	<b>4</b> □ H	132회×4명×75,000원		
2026년	활동보상금	4명	=39,600,000원		
	금연지도원	6명	12개월×6명×40,000원		
	교통비 수당	0.0	=2,880,000원		
	금연지도원 주간근무자	2명	168회×2명×52,000원		
	활동보상금	40	=17,472,000원		
2027년	금연지도원 야간근무자	4명	132회×4명×78,000원	61 526	
2027년	활동보상금	40	=41,184,000원	61,536	
	금연지도원	6명	12개월×6명×40,000원		
	교통비 수당	0.0	=2,880,000원		

\* 재원조달방안 : 국비(50%), 도비(15%), 시비(35%)

\*\* 2023년 논산시 생활임금 : 시급 10,840원

\*\*\* 활동보상금은 논산시 생활임금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 반영

## 3. 작성자

## 건강증진과장 이 혜 란

## 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: 천원)

구	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	입	52,512	54,768	57,024	59,280	61,536	285,120
국	비	26,256	27,384	28,512	29,640	30,768	142,560
도	时	7,877	8,215	8,554	8,892	9,230	42,768
시	ㅂ]	18,379	19,169	19,958	20,748	21,538	99,792
세	출	52,512	54,768	57,024	59,280	61,536	285,120
	반보전금  타보상금						
	지도원 보상금 등	52,512	54,768	57,024	59,280	61,536	285,120
재-	원 조달	52,512	54,768	57,024	59,280	61,536	285,120
	소 계	34,133	35,599	37,066	38,532	39,998	185,328
의존 재원	보조금	34,133	35,599	37,066	38,532	39,998	185,328
	지방 교부세						
	소 계	18,379	19,169	19,958	20,748	21,538	99,792
자체 수입	지방세	18,379	19,169	19,958	20,748	21,538	99,792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フ	급						
공기업	특별회계						
기 (채무 <sup>:</sup>	타 부담, 민자 등)						

## 붙임2

## 관계법령(발췌)

#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## 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- 제16조의5(금연지도원의 자격 등)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  - 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건강·금연 등 보건정 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  -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
  - 1.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
  - 2.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
  -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.
 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 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, 금연의 필요성,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
수·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**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**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